

		<b>보도설명자료</b>	
		<b>배포일시</b>	2019. 12. 13(금) / 총 3매(본문 3)
<b>담당 부서</b>	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	<b>담당자</b>	·과장 김완국, 사무관 이양구, 주무관 임태정 ·☎ (044) 201-4016, 4018, 4019
<b>보도일시</b>		12월13일(금요일) 10:00시 이후 보도가능합니다.	

## 화물차 안전운송운임 1km당 평균 컨테이너 2,277원, 시멘트 957원 결정 - 12.12(목) 안전운임위원회 의결, 12월 중순 운임표 고시 예정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월 12일(목)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\*(위원장 윤영삼)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,033원 및 2,277원,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
\* (총 13명) 공익 대표위원 4명, 화주·운수사업자·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

### < 화물차 안전운임 개요 >



구분	내용
적용대상	· 안전운송운임 :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· 안전위탁운임 :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
적용기간	'20.1.1 ~ '22.12.31(3년간)
강제성	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시 과태료 500만원
도입품목	컨테이너, 시멘트

- 안전운임제는 저(低)운임으로 인해 과로·과적·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물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.
- 제도 도입 당시\*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·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('20~'22년)로 도입되었으며,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\* 48회의 이해관계자 회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('18.4)

-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, **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 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.**
    - 예를 들어,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~서울 강동구(383km) 구간 **왕복 운임**의 경우,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**안전운송운임**은 82만 9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**안전위탁운임**은 73만 6천원 수준이다.
    - 한편, **시멘트** 품목은 단양군청~강동구청(150km) 구간 **왕복운임**의 경우,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**안전운송운임**은 29만 1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**안전위탁운임**은 27만 3천원 수준이다.
  - 이번에 공표되는 '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**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 위원회 발족 이후, 안전운임위원회(17회), 전문위원회(5회), 운영위원회(26회)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되었으며,**
    - 최종적으로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**공익위원(안)**에 대한 위원들의 **표결을 통해 결정되었다.**
    - 안전운임이 최초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**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에 일부 위원\*이 불참하였으며, 내년도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시에는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제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**
- \*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
-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, **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**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하여 **평균 12.5% 인상(거리구간별로 4~14% 수준)되고,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.2% 인상되어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.**

-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(왕복 기준)은 약 5만 7천원(이윤율 1.3% → 3.25%) 수준,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(왕복 기준)은 약 1만 7천원(이윤율 1.1%) 수준으로 예상되고,
  -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-운송사 및 운송사-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  
-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‘안전운임신고센터’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,
  - \* 안전운임 지급 위반사항 확인 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조치
  - 한국무역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, 화물연대 본부 등과 협력하여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·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.
  
-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“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, 과속,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하면서,
  - “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,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(☎ 044-201-401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